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최근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수많은 인명피해사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학교의 장이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포함시켜야 할 학생안전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다. 학교장의 학교현장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에 대하여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현장교육에 대한 심의·자문을 실시하고, 학교장의 의무이행을 확인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을 위한 사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6조)

마.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전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현장교육 전체 과정에 대하여 참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교육감은 모든 학교현장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함(안 제9조)

아.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bks324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가 학교현장교육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현장교육”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현장교육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학교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학교현장교육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안전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5.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현장교육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대책
 2.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 ③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학교현장교육계획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의무이행을 확인한다.

제6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학교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이의제기) ①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교육 계획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감의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모든 학교현장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현장교육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현장교육지원단 설치·운영)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은 다양한 학교현장교육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단위학교 컨설팅, 대규모 학교현장교육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

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14.]

※ 제8조의2 조문은 2014.5.14. 일부개정되어 2014.11.15. 시행예정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은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에 대한 교유감의 책무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여부는 학생현장교육지원단 설치 여부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학교현장교육지원단 설치 시 경비지원 및 인력채용 등 방법에 따라 예산지원이 달라져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이 도 형 의원